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11.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9.11.19

다. 상정일자 :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09.12. 2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종 업 치수방재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과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「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」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「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로 변경

- 2)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
 - 「지방재정법」 제64조제1항을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로 변경
 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156조제2항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으로 변경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제3항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로 변경
- 3)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
- 4)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
 -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”을 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”으로
 -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”으로
 - “장기예치기금액”을 “적립금”으로
 - “당해연도사용기금액”을 “해당 연도 사용기금액”으로
 -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변경

3. 검토보고 [신승관 전문위원]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달한 “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”에 따라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은 “건설교통국장”에서 “치수방재과장”으로, 기금출납원은 “치수방재과장”에서 “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”으로 변경하고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,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」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·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에 안전을 기하고, 기금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